# 작성 방법

**1. 전문**

| 주식회사 ABC(이하 “ABC”라 한다)와(과) 주식회사 XYZ(이하 “XYZ”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
| --- |

**2. 기술 제공의 목적**

| **제00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ABC와(과) XYZ가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정보가 교환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비밀 유지 의무와 관련된 다른 조항에서도 이 내용이 참조될 필요가 있음

◦ 비밀유지협약 내에서 가능할 때마다 공개된 정보의 사용 방법에 대한 당사자의 상호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3.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

| **제00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
| --- |

◦ 기밀로 간주 될 정보의 유형을 명확히 정의해야 하며,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의가 적절할 수 있으나 특정 문서 또는 공개할 데이터 세트에 한정된 정의와 같이 더 좁은 정의가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음

◦ 본 표준 비밀유지협약서는 기술 거래 등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대상 비밀정보를 망라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큼

| **제00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
| --- |

◦ 이 항목을 검토할 때는 자신이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정보가 반드시 비밀정보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 또한 협약 체결 이후 비밀정보로 관리되기를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정보임을 표시해야 함

◦ 업무상 체결하는 대부분의 계약서에 ‘정보를 제공할 때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에 한해 비밀정보로 취급한다’고 규정되는 경우가 많음을 주지하여 비밀의 표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영업비밀 침해 관련 대법원 판례[[1]](#footnote-0) 또한,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비밀 유지 노력’을 인정 받기 위하여, “정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하여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음.

◦ 서로 간의 내부 사정을 알 수 없는 제3자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기술의 공개·제공이 필요한 경우, 비밀 유지 협약 등에 비밀 정보의 내용을 명확히 특정하고, 또한 해당 정보에 비밀 표시를 하는 것은 필수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조치임

**4. 비밀 유지 기간 등**

| **제00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
| --- |

◦ 정보를 받는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및 그러한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함

◦ 위 예제에서 본 비밀 유지 협약(NDA)의 협약 기간을 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거래 교섭 및 필요한 자료 등의 전달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 그 이후의 비밀 유지 의무의 존속 기간을 따로 둔 것은, 본 협약의 의무 조항인 자료의 폐기, 반환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일정한 유지 기간을 두어 무형의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정보 제공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

◦ 필요에 따라, ‘개별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OO년’, ‘개별 비밀정보의 반환·폐기일로부터 OO년’으로 비밀 유지 기간을 일원화하는 것도 가능함

◦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해당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취득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footnote-1)의 입장임

◦ 위 5년의 협약기간 및 3년의 비밀유지 기간은 예시로서, 위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소송 시에는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합리적으로 조정된다고 하여도 협약에 명시된 기간보다 길게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5. 비밀유지 의무 등**

| **제00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

◦ 제공한 정보를 정보수령자가 어떤 목적 및 용도로 사용하게 할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목적 및 용도 이외 사용금지도 비밀유지협약의 한 핵심요소인 점을 주지하여야 함

◦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그 범위를 좁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보수령자가 제공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적 범위(위 조항에서는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를 명시하고, 상기 인적 범위 내의 인원에 대한 조치 및 인적 범위 외의 인원에게 공유하려고 할 경우에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취해야 할 사전 조치가 포함되어야 함

◦ 기술거래계약(본 계약)의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기술의 가치평가를 업무 수행 임직원 이외의 제3자에게 의뢰한다거나 선행기술의 조사 분석 등을 외부에 의뢰하는 등 해당될 만한 사안들이 다수 있을 수 있어,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및 사전 서면 승낙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제00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 |

◦ 상기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문구는 법 해석 상으로도 영업비밀유지 노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정보제공자가 스스로 비밀정보의 내용을 명확히 특정하고 고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함

◦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 이외에 비밀이 계속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적극적 의무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비밀 유지 노력의 수준 또한 최소한 “합리적인 노력” 수준 이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6. 위반 시 배상**

| **제00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3억원 및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 --- |

◦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책임에 대해 명시함

◦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액을 크게 정하면 정할수록 좋겠지만, 과도할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가능성도 일부 존재함

◦ 정보의 가치, 위반 행위의 억제 효과 등을 고려해 적절한 규모로 손해배상액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위약벌은 손해배상에 더하여 별개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감액되지 않으나,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여지가 있음

◦ 손해배상만으로 이행 강제의 효과나 손해의 구제 가능성이 충분한 지를 살펴, 위약벌 조항의 필요 여부를 고려해야 함

**7. 비밀정보의 반환·폐기**

| **제00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 |

◦ 비밀유지협약의 종료 또는 본 업무(목적 사업)이 종료된 후, 더 이상 정보 수령자에게 남아 있을 필요가 없는 비밀정보는 관리의 사각 지대가 될 수 있고, 또한, 사후적인 유용 및 유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비밀유지협약에 반환·폐기의 의무 및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8. 권리 귀속 등**

| **제00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

◦ 당사자들이 각각의 지식재산권을 유지하고 비밀유지협약이 부여하는 지식재산의 실시허여(라이선싱)가 없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공한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그에 파생되는 권리에 대한 소유권 등이 정보 제공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조항임

| **제0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 --- |

◦ 비밀유지 협약의 당사자 이외에 협약 상의 권리의무를 공유하는 제3자가 발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조항으로서, 비밀 유지 의무의 대상자를 명확히 한정하고, 관리하는 효과가 있음.

◦ 특히 기업 간의 거래 교섭은, 기업 내부의 직원 및 거래처 등 이해 관계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의무의 주체 및 협약의 수정·변경 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잡음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9. 분쟁 해결**

| **제0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 |

| **제00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
| --- |

◦ 소송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꾀할 수 있는 제도이나, 경우에 따라 시간 및 비용 면에서 비효율이 있을 수 있음

◦ 신속하고 원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 및 중재와 같은 소송 대체적 분쟁 해결수단(ADR)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조정 (Mediation)**  ◦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성립한 조정합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화해(민법 제731조)와 동일  ㅇ 조정합의 성립 전의 조정안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당사자가 이에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음  **\* 중재 (Arbitration)**  ㅇ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맡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ㅇ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ㅇ 불복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
| --- |

◦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의 유출, 탈취, 도용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분쟁에 특화된 조정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

| **\*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https://www.ultari.go.kr/**)**  ㅇ 설치 근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ㅇ 조직  - 50명의 전문가로 구성 (판사, 변호사 등 직능위원 24명, 기계, 소재 등 기술분야 전문위원 26명)  ㅇ 소요 기간  - 조정의 경우 3개월, 중재의 경우 5개월 소요  ㅇ 비용  - 조정 또는 중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법률대리인 및 소송비용 지원  - (필요시) 법률전문가 자문 및 기술가치평가 등 지원 |
| --- |

**10. 보칙 등**

| **제00조(보칙)**  ‘ABC’과 ‘XYZ’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
| --- |

# 예시 양식

| **비밀유지협약서(NDA)**  주식회사 ABC(이하 “ABC”라 한다)와(과) 주식회사 XYZ(이하 “XYZ”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ABC와(과) XYZ가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3억원 및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3조(보칙)**  ‘ABC’과 ‘XYZ’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ABC”  (명칭)\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XYZ”  (명칭)\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
| --- |

1. 대법원ﾠ2008.7.10.ﾠ선고ﾠ2008도3435판결 등 [↑](#footnote-ref-0)
2.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footnote-ref-1)